

# 수용재결무효확인

[서울고등법원 2016. 11. 24. 선고 2016누48166 판결]

## 【전문】

【원고, 피항소인】

【피고, 항소인】

중앙토지수용위원회

【피고보조참가인】

대한민국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대 담당변호사 김강의)

【제1심판결】

서울행정법원 2016. 5. 20. 선고 2015구합78557 판결

【변론종결】

2016. 10. 6.

【주 문】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,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 및 항소취지】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3. 1. 18.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한 수용재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【이 유】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, 제1심 판결문 중 “(지번 1, 지번 2, 지번 3)”을 “(지번 1, 지번 2, 지번 4)”로 모두 고치고, 피고보조참가인(이하 ‘참가인’이라 한다)의 주장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[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](#), [민사소송법 제420조](#)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추가하는 부분

가. 참가인은, 이 사건 수용재결 이후인 2013. 2. 18.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사이에 협의취득의 합의가 이루어졌고, 같은 날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상금은 이 사건 수

용재결이 아닌 위 협의취득 합의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이므로,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지위에 있지 않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.

그러나 이 사건 수용재결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를 다투고 있고, 원고와 이 사건 사업시행자 사이에 별도의 협의취득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에게 지급된 보상금도 그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참가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상,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되므로,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협의취득 합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향후 위와 같은 원고의 수용보상금 재산정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, 원고에게는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.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(나아가 참가인의 위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[구 토지보상법 제42조 제1항](#)에 의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은 효력을 상실함이 명백하므로, 이 사건 수용재결의 무효 확인만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참가인의 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결론은 달라지지 아니한다).

나. 참가인은, 미지급된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의 3.3%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, 일부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의 보상금지급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미지급 금액이 32,414,950원에 이르러 이를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위도 단순한 계산방법의 착오나 업무처리상의 실수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사업시행자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었고, 이에 대하여 원고도 이의를 제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일부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의칙상 수용보상금의 전액 지급과 동일하다고 보거나 적법한 수용보상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.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다. 참가인은 수용보상금을 일부 미지급한 경우에도 구 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하더라도, 이 사건 사업시행자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(지번 1, 지번 2, 지번 4)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2필지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, 적어도 위 2필지에 대한 수용재결의 효력은 존속한다고 주장한다.

그러나 [구 토지보상법 제64조](#)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한 보상은 수용의 대상이 되는 물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의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므로([대법원 1998. 1. 20. 선고 96누12597 판결](#)참조), 수용보상금 미지급에 따른 수용재결의 실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이를 피보상자 개인별이 아닌 수용 대상 물건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은 아니다.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

### 3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[별지 생략]

